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250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

담당변호사 김석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560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1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560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C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한 회사이고, 피고는 C의 형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7.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1)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1999. 7. 30. 여신한도금액 4억 원(이후 3억 6,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거래기간 2000. 7. 29.까지(이후 2001. 7. 24.로 연장되었다)로 된 할인어음 한도거래약정, 2001. 6. 28. 여신한도금액 4억 원, 거래기간 1년으로 된 할인어음 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은 D에 대하여 위 회사의 위 각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2004. 11. 4. E 및 C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F(이하 '소외1회사'라고만 한다)에 양도하였고, 소외1회사는 2006. 10. 30. E 및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2092호로 위 양수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7. 1. 25. "E 및 C은 연대하여 소외1회사에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7. 1. 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15.

확정되었다.

3) 소외1회사는 2011. 4. 26. G 유한회사(이하 ‘소외2회사’라고만 한다)에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2회사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12. 26. E 및 C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959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1. 6. ‘E 및 C은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7. 1.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9. 1. 25. 소외2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 등

1) 이 사건 부동산은 H의 소유였는데, H는 2000. 1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H의 자녀들인 피고와 C 및 I, J, K이 있었다.

2) 피고와 C 및 I, J, K은 2016. 12.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560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친 H의 사망일인 2000. 11. 30.경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2016. 12. 7.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C의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어 총 재산으로 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C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및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고 C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약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고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2,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나,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포기한 상속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람

별지